

1. 개정이유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00.00. 공포, 2024.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7까지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증 교부 신청일 또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만족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고 있음을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부터 판정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마련(안 제119조의2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원자로의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함.

다.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3조 개정)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서류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오기, 누락 등”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18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제2호”를 “제116조의4제1항·제3항,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 영 제12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는 별지 제104호의2와 같다.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신체검사의 시기)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118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날 또는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1년 이전부터 교부 신청일 또는 갱신 신청일 전까지 실시한다.

제116조의3(신체검사의 합격기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6조의4(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체검사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00호의2 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이하 “신체검사 판정서”라 한다)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00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이하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를 접수하는 즉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 판정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의5(신체검사의 방법·판정 등)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검사자”라 한다)은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신체검사검사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체검사 판정서에 충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 문진표와 함께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판정관”이라 한다.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판정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검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검사자료 및 문진표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적합: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조건부적합: 일부 검사 항목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체검사판정관이 원자로조종면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보조 수단, 주기적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
3. 판단보류: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부적합: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신체검사판정관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6조의6(신체검사 판정서의 교부 등)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판정을 완료한 신체검사 판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신체검사신청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교부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교부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교부 일자와 신체검사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교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체검사신청자에게 신체검사 판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7(원자로운영자의 조치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의 원자로의 운

전업무 또는 영 제1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이하“원자로의운전 업무등”이라 한다) 종사자에게 원자로의운전업무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116조의5제3항제2호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가 원자로의운전업무등에 종사하는 중 조건부적합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즉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 다른 사람과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의 조건 이행 현황(매월)
2. 업무 배제 조치 등 조치 사항(발생 시)

제118조의 제목 “(면허증의 발급신청 등)”을 “(면허증의 교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일”을 “30일”로, “제외)”를 “제외한다)와 제116조의6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체검사 판정서(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응시자격”을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으로, “신청서”를 “면허증의 교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신청”을 “교부신청”으로, “발급해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한다”를 “교부한다”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영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제9장에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①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

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4호의4서식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2. 제116조의6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3. 갱신을 받으려는 원자로조종면허증
4. 사진 1매

② 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여 교부하려는 경우 그 면허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교부한다.

③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원자로조종면허 중 열출력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1일 이상

제142조제28호 중 “발급신청서 및”을 “교부신청서,”로,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 및 제119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1호 중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및 영 제126조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6호 항목란 나목 중 “발급을”을 “교부를”로 하고, 같은 항목란 다목 중 “재발급(정정·갱신 등)을”을 “재교부(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및 갱신)를”로 한다.

별지 제10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4호의2서식, 제10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 제116조의3, 제116조의4, 제116조의5, 제116조의6 및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시행하는 원자로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청서·면허증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8조 또는 제119조에 따라 신청한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면허

증이 교부 또는 재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은 각각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각각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증으로 재교부해 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면허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증 교부신청서로, 종전의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면허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증 재교부신청서로 본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1.>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법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및 마. (생략)
2. (생략)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4. 11. 1.>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기준(제116조의3 관련)

- 신체검사신청자가 제2호의 모든 검사 항목에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거나 일부 검사 항목에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체검사판정관이 원자로조종면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보조 수단, 주기적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항목

검사 항목	부적합 조건	검사 방법
가. 심혈관계	1) 안정시 혈압이 지속적으로 160/100 mm Hg를 초과하는 상태 2) 안정시 심박수가 50회 미만인 상태로 검사자가 부적합이라고 판단하는 상태 3)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심장 질환 상태	1) 혈압측정 2) 안정시 심박수 3) 심전도 검사 4)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5) 건강이력 6)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나. 호흡기계	호흡기 방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폐 기능 상태	1) 건강이력 2) 폐기능검사(필요시) 3)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다. 위장관계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위장관계질환 상태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라. 내분비계	1) 조절이 안되는 당뇨병(당화혈색소 9 이상) 2) 통제 불가능한 갑상선 질환 상태	1) 혈액검사: 당화혈색소 2) 갑상선 호르몬 검사 3) 건강이력 4)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마. 근골격계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근골격계 또는 류마티스 질환 상태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바. 신경계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기능 장애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사. 조혈계(혈액)	1)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혈액장애 상태 2) 혈액검사에서 다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가. 혈색소량: (남성) 11 ~ 17.5 [g/dL], (여성) 8 ~ 17.5 [g/dL] 나. 혈소판수: 100 ~ 800 [$10^3/\mu$] 다. 백혈구수: 2,500 ~ 30,000 [$/\mu$]	1) 건강이력 2) 혈액검사: 혈색소량, 혈소판수, 백혈구수

아. 악성종양(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 않은 악성 종양 치료 중으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지장이 있는 상태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자. 비노생식기계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만성 신부전 또는 재발성 신부전 상태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차. 피부/임파	1) 개인 방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피부 상태 2)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림프계 또는 면역계 질환 상태	1) 육안 검사와 피부 촉진 2) 건강이력 3)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카. 눈	1) 맨눈 또는 교정상태에서 양쪽 눈 모두 근·원시 시력이 0.8(Decimal) 미만인 상태 2) 시야가 70도 미만인 상태 3) 적색, 녹색, 주황색(황색) 신호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각이상	1) 시력검사 2) 시야검사 3) 색각검사(필요시 색등검사) 4)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타. 정신/심리	1) 밀폐되거나 혼잡한 공간, 어두운 곳, 높은 곳, 개방된 격자(open grating) 및 사다리 위에서와 같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신적 장애로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2)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파. 청력	청력 교정장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청력 손실은 2,000Hz에서 30dB, 3,000Hz에서 40dB, 4,000Hz에서 40dB를 초과하는 상태	1) 순음청력검사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하. 약물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법 마약류 복용이 확인된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2) 약물의존으로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1)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필로폰, 대마, 몰핀, 암페타민, 코카인, 엑시터시 등) 2) 건강이력 3)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1. 1.>

수수료(제146조 관련)

1.~5. (생 략)

6. 법 제87조에 따른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생 략)	
나.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5,000
다. 면허증 재교부(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및 갱신)를 신청하는 경우	2,500

7.·8. (생 략)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

신청인	성명						사 진 (3.5cm × 4.5cm)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면허종류								
※ 신체검사 개별 검사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를 따른다.									
신장	체중	BMI	혈압(안정시, mmHg)		맥박(안정시)		알레르기		
cm	kg		수축기	이완기		[] 규칙 [] 불규칙			
시력		소변 검사							
구분	나안 (맨눈)	교정	요pH	요당	요단백	요잠혈	기타		
원거리	좌		색각 - (신규대상만 해당, 면허갱신시 비해당)				[] 통과(정상 색각) [] 미통과(색맹)		
	우		시야				[] 통과 [] 미통과		
근거리	좌		청력				[] 통과 [] 미통과		
	우		심전도(EKG)	[] 정상 EKG [] 비정상 EKG ()					
검사항목		적합	부적합	기타	검사항목		적합	부적합	기타
가. 심혈관계					아. 악성종양(암)				
나. 호흡기계					자. 비뇨생식기계				
다. 위장관계					차. 피부/임파				
라. 내분비계					카. 눈				
마. 근골격계					타. 정신/심리				
바. 신경계					파. 청력				
사. 조혈계(혈액)					하. 약물				
주석 : 검사소견 중 비정상 소견에 대해 상세 기술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검사자(면허번호/담당의사)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판정 결과		판정 사유, 조건부적합 조건 등(필요시 소견서 별첨)							
[] 적합 [] 조건부적합									
[] 판단보류 [] 부적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병원(의원)장

직인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질문	예	아니오	질문	예	아니오
심혈관계			조혈계		
1. 운동이나 활동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21. 빈혈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심장 질환을 진단 받거나 심장 관련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2. 이외 혈액 관련 질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현재 심장 및 고혈압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악성종양(암)		
호흡기계			23.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4. 폐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24.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최근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나 배변활동에 변화가 있습니까?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경우) 암 치료 중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5. 기관지 천식을 진단 받거나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비뇨생식기계		
6. 수면시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25. 신장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장관계			26. 배뇨 곤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7. 갑작스런 복통이나 탈장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까?			27. 성기주위 이상 증상이 있습니까?		
8.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반복된 적이 있습니까?			피부, 임파		
9. 간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28. 피부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10. 담도계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29. 자가면역 관련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분비계			눈		
11. 갑상선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0. 물건이 돌로 보일 때가 있습니까?		
12. 당뇨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1. 색각 이상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13. 저혈당 또는 고혈당 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32. 이외 안과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14.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신/심리		
근골격계			33.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15. 현재 근육통, 관절통, 뼈의 통증이 있습니까?			34.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사의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6. 관절이 뻣뻣하거나 붓는 증상이 있습니까?			35.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경계			36. 정신건강 또는 약물 남용 문제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17. 발작 또는 의식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37. 알코올 또는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18.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진탕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약물		
19.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감각의 변화가 있던 적이 있습니까?			38. 복용 중인 약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에 복용 목록 작성)		
20. 신체균형 감각에 변화가 있거나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39.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40.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질환이나 장애를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기 질문 중 “예”를 기입하신 문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질환이 있는 경우 현재의 의학적 상태(완치, 조절 및 관리 상태, 후유증 여부 등))

알레르기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의 종류, 복용 사유, 복용량, 복용 빈도 등에 대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의4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과거 병력(주요 병력)을 적었으며, 만약 본 문진표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을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86조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갱신한 행위로 간주하여 면허가 취소 및 같은 법 제117조제8호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 _____ 서명 : _____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부서 및 직위	
	면허종류		
	노형(爐型) 및 용량급		

면허증 서식 선택 (하나만 선택)

[]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수첩형), [] 별지 제10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상장형)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면허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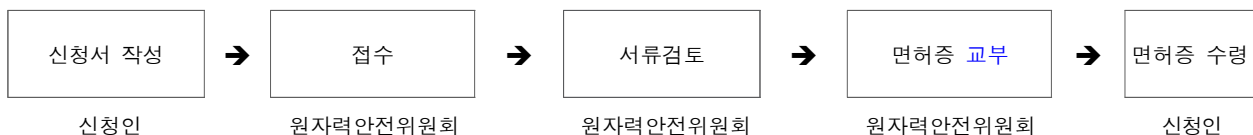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지)

-1-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증
원자로조종사



원자력안전위원회

80mm×130mm[백상지 150g/㎡]

주의사항(Notes)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사람 또는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취소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revoked if it has been obtained or renewed by illegitimate means, lent to other persons or entities. (Article 86 of the Nuclear Safety Act)]
- 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이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2항). [The holder of the license may request its re-issuance in the event that it is damaged or lost, or entries are changed. (Article 88(2) of the Nuclear Safety Act)]

-2-

-3-

제 호

면허증

면허종류:

공급자:

노형(爐型) 및 용량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교부합니다.

취득
교부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사진

(3.5cm×4.5cm)

No.

Certificate of License

Type of License:

Supplier:

Type and Capacity of Reactor :

Name:

Date of Birth:

Address: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1)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Article 118 of the its Regulation

Date of Acquisition:
Date of Issu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직인

-4-

기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등 (Education course completed)	확인 (Checked)

-5-

기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등 (Education course completed)	확인 (Checked)

-6-

유효기간/조건(필요시) (Valid period/Conditional Restriction)	확인 (Checked)

-7-

일자 (Date)	신상변동사항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data)	확인 (Checked)

제 호 / No.

면 허 증 (Certificate of License)

사진
(3.5cm×4.5cm)

1. 면허종류(Type of License):
2. 공급자(Supplier):
3. 노형(爐型) 및 용량급(Type and Capacity of Reactor):
4. 성명(Name):
5. 생년월일(Date of Birth):
6. 주소(Address):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교부합니다.[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1)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Article 118 of the its Regulation.]

취득(Date of acquisition)

년 월 일

교부(Date of Issue)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주의사항(Note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취소 정지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revoked if it has been obtained or renewed by illegitimate means, lent to other persons or entities. (Article 86 of the Nuclear Safety Act)]
2. 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이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2항). [The holder of the license may request its re-issuance in the event that it is damaged or lost, or entries are changed. (Article 88(2) of the Nuclear Safety Act)]

교육 이수(Education) 등

기 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등 (Education course completed)	확인 (Checked)

유효기간/조건(필요시)(Valid Period/Conditional Restriction)

유효기간/조건(필요시) (Valid period/Conditional Restriction)	확인 (Checked)

신상변동사항(Personal Identity)

일 자 (Date)	신상변동사항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data)	확인 (Checked)

(표지)

-1-

핵 연 료 물 질 취 급 감 독 자
핵 연 료 물 질 취 급 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증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 사 선 취 급 감 독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80mm×130mm[백상지 150g/m²]

주의사항(Notes)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취소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revoked** if it has been obtained by illegitimate means, **or** lent to other persons or entities.(Article 86 of the Nuclear Safety Act)]
- 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이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2항). [The holder of the license may request its re-issuance in the event that it is damaged **or** lost, **or entries are changed.** (Article **88(2)** of the Nuclear Safety Act)]

-2-

-3-

제 호
면 허 증

면허종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3.5cm×4.5cm)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교부합니다.

취득
교부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No.

Certificate of License

Type of License:

Name:

Date of Birth:

Address: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1)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Article 118 of the its Regulation

Date of Acquisition:

Date of Issu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직인

-4-

기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Education course completed)	확인 (Checked)

-5-

기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Education course completed)	확인 (Checked)

-6-

일자 (Date)	신상변동사항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data)	확인 (Checked)

-7-

일자 (Date)	신상변동사항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data)	확인 (Checked)

제 호 / No.

면 허 증 (Certificate of License)

사진
(3.5cm×4.5cm)

1. 면허종류(Type of License):
2. 성명(Name):
3. 생년월일(Date of Birth):
4. 주소(Address):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교부합니다.[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1)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Article 118 of the its Regulation.]

취득(Date of acquisition)

년 월 일

교부(Date of Issue)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주의사항(Note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취소.(「원자력안전법」 제86조).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revoked** if it has been obtained by illegitimate means, **or** lent to other persons or **entities**. (Article 86 of the Nuclear Safety Act)]
2. 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이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2항). [The holder of the license may request its re-issuance in the event that it is damaged **or** lost, **or** entries are changed.(Article 88(2) of the Nuclear Safety Act)]

교육 이수(Education)

기 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Education course completed)	확인 (Checked)

신상변동사항(Personal Identity)

일 자 (Date)	신상변동사항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data)	확인 (Checked)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소					
	(전화번호 :)					
	근무처	부서 및 직위				
	면허종류	면허번호				
	노형(爐型) 및 용량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면허증 서식 선택(하나만 선택)

[]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수첩형), [] 별지 제10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상장형)

「원자력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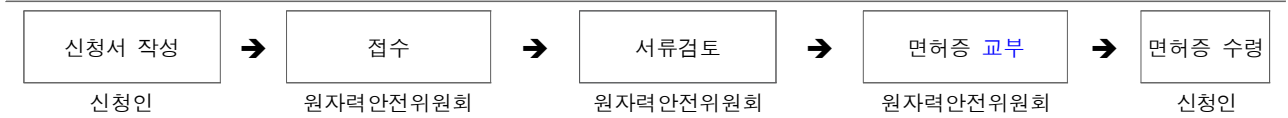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근무처	부서 및 직위	
	주소		
	면허종류	번호 · 발행일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 통보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부서 및 직위	
	면허종류	번호 · 교부일자	
	노형(爐型) 및 용량급		

「원자력안전법」 제8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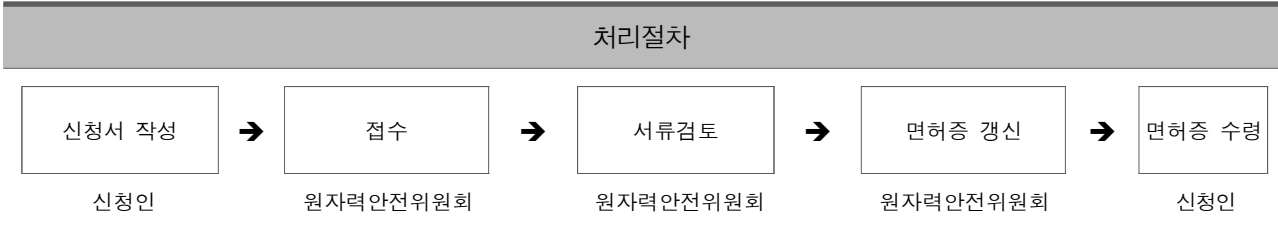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104호의4서식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2. 제116조의6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3. 갱신을 받으려는 원자로조종면허증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 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 호서식과 같다.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 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 호서식, 영 제126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 로조종면허”라 한다)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는 별지 제104호의2 와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 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 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② ----- ----- -----. 1. ----- ----- -----

현행	개정안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u>제118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제2호</u>에서 같다) 1매 2. (생략) ③ <u>법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중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흉곽 엑스선사진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의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제한하며, 위원회가 원자로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u> <u><신설></u>	----- ----- ----- <u>제116조의4제1항·제3항,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2제1항제4호</u>-----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제116조의2(신체검사의 시기)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체검</u>

현 행	개 정 안
	<u>사는 제118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날 또는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1년 이전부터 교부 신청일 및 갱신 신청일 전까지 실시한다.</u>
<u><신 설></u>	<u>제116조의3(신체검사의 합격기준)</u> <u>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u>
<u><신 설></u>	<u>제116조의4(신체검사의 신청 등)</u> <u>①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체검사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이하 “신체검사 판정서”라 한다)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신체검사신청자는 제1항에</u>

현행	개정안
<신 설>	<u>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00호의3서식의 원자로 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이하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를 접수하는 즉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 판정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u> <u>제116조의5(신체검사의 방법·판정 등)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은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u> <u>② 신체검사검사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체검사 판정서에 충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 문진표와 함께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u>

현행	개정안
	<u>로서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판정관”이라 한다.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신체검사판정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검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검사자료 및 문진표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u> <u>1. 적합: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u>2. 조건부적합: 일부 검사 항목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체검사판정관이 원자로 조종면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보조 수단, 주기적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u> <u>3. 판단보류: 재검사 또는 정밀</u>

현행	개정안
<신 설>	<u>검사가 필요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u> 4. 부적합: 제1호부터 제3호까지 <u>해당하지 않는 경우</u> ④ <u>신체검사판정관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u> 제116조의6(신체검사 판정서의 교부 등) ① <u>신체검사의료기관은 판정을 완료한 신체검사 판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 ② <u>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신체검사신청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교부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교부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교부 일자와 신체검사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교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체검사신청자에게 신체검사 판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7(원자로운영자의 조치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또는 영 제1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이하“원자로의 운전업무등”이라 한다) 종사자에게 원자로의 운전업무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116조의5제3항제2호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면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일부터 <u>20일</u> 이내에 영 제118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u>제외</u>)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종사자가 원자로의 운전업무등에 종사하는 중 조건부적합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즉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 다른 사람과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u> <u>1.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의 조건 이행 현황(매월)</u> <u>2. 업무 배제 조치 등 조치 사항(발생 시)</u>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 ----- ----- ----- <u>30일</u> ----- ----- ----- ----- ----- <u>제외한다</u>)와 제116조의6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체검사 판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u>응시자격</u>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u>신청서</u>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u>발급신청</u>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u>발급해야</u>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발급한다</u>. 1. 2. (생략)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u>영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u>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과 같다. ② (생략) <u><신설></u>	<u>정서(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② ----- <u>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u> ----- ----- ----- <u>면허증의 교부신청서</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교부신청</u>----- ----- ----- -- <u>교부해야</u> ----. ⑤ ----- ----- ----- <u>교부한다</u>. 1. 2.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u>법 제88조제2항</u>----- ----- -----. ② (현행과 같음) <u>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u>

현행	개정안
	<u>신 방법 등) ①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1. 별지 제104호의4서식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u> <u>2. 제116조의6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체검사 판정서</u> <u>3. 갱신을 받으려는 원자로조종면허증</u> <u>4. 사진 1매</u> <u>② 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u>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① (생략)	<u>하여 교부하려는 경우 그 면허</u> <u>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하는 방</u> <u>식으로 교부한다.</u>
②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u>③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u> <u>및 핵증기공급시스템의 공급사가</u> <u>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u> <u>자로조종사 면허를 모두 받은</u> <u>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u> <u>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u> <u>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도</u> <u>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u>
1. (생략)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 ----- -----.
2. (생략)	1. (현행과 같음)
제142조(허가·검사 및 면허시험 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u>1의2. 원자로조종면허 중 열출</u> <u>력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u> <u>또는 교육용원자로의 운전</u> <u>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1일</u> <u>이상</u>
	2. (현행과 같음)
	제142조(허가·검사 및 면허시험 등의 신청) -----

현행	개정안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 -----.
1. ~ 27. (생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제118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신청서 및 제119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	28. ----- 교부신청서, ----- ----- 재교부신청서 및 제119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
29. · 30. (생략)	29. · 30. (현행과 같음)
31. 영 제124조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31. ----- - <u>응시원서 및 영 제126조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u>
32. (생략)	32. (현행과 같음)